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486호 2015. 6. 17.(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2015-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4
거창군 고시 제2015-74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5
거창군 고시 제2015-75호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7
거창군 고시 제2015-76호 도로명주소 고시.....	8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55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 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거창군 공고 제2015-559호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 한」 조례(안) 입법예고.....	19
거창군 공고 제2015-564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입법예고.....	23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8호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27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9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등 지원에관한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5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10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법예고).....	40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11호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45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12호 거창군 국어 진흥조례안(입법예고).....50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13호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56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5-14호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운용 기본조례안(입법예고).....61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고시 제2015 - 71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1일

거 창 군 수

신청인	거창군수 (건설과)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천명	거창위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315-24번지 외1필지 일원	
	면 적	- 영구점용 : 20.0㎡ - 일시점용 : 60.0㎡	
	점용기간	2015년 06월 11일 ~ 영구	
	목 적 및 사 유	장백양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	

고시 제2015 - 72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2일

### 거 창 군 수

신청인	거창군수 (건설과)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하천명	황강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47-5번지 외 10필지 일원	
	면 적	영구점용 : 271.0m <sup>2</sup>	
	점용기간	2015년 06월 11일 ~ 영구	
	목 적 및 사 유	주상면소재지 도로정비공사에 따른 구조물(인도) 설치	

#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15 - 74 호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정윤재(에버그린전원마을 대표)가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에버그린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수월리 산97-97]

2. 사업주체

가. 상호 : 에버그린전원마을

나. 대표자 : 정윤재

다. 영업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5-3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97외 3필지

나. 사업면적 : 16,381㎡

다. 규모 : 주택용지 12필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6,381	100	
주거용지	11,921	72.77	
단지내도로	2,899	17.70	
공공시설용지 (공용상수도, 녹지공간, 저류지)	1,561	9.53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6월 12일 ~ 2017년 10월 31일

5. 붙임 : 도로의 지정공고

# 도로의 지정 공고

아래 사항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사업위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97외 3필지
2. 사업면적 : 16,381㎡
3. 도로지정면적
  - 가조면 수월리 산97-97외 1필지 : 2,899㎡
4. 토지소유자 : 정윤재
5. 승인번호 : 2015-도시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15. 06. 12.

## 거창군수

※ 관계서류(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에 비치합니다.

##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3 착수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6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일원
3. 소재지 규모 : 법정리 1개, 자연마을 5개
4. 면적 : 1,254ha(농경지 :174ha, 임야 415ha, 기타167.7ha)
5. 가구·인구 : 152호(농가 : 111호, 비농가 : 41호), 인구 297명
6. 사업비 : 4,080백만원(국 2,856, 도 367.2, 군856.8)
7.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4년간)
8. 시행자 : 거창군수
9. 주요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어울림마당조성(노인공동홈시설조성, 공동 주차장, 운동공간, 공원 조성)
  - 지역경관개선사업 : 저수지진입농로정비, 낙원진입로 테마가로 정비, 지산낙원경관정비(마을안길정비등)
  -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마을경영지원등
10.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940-3543)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211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15-555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668명 ⇒ 670명(증 2명)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2명
  - 안전총괄과(증원 2명) : 행정·방재안전 7급(증원 1명)  
시설·방재안전 8급(증원 1명)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행정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 에게 서면이나 메일 (imf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6.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668명 ⇒ 670명(증 2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2명

- 현행 : 596명(본청274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조정 : 598명(본청276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 사업소45명, 읍36명, 면136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68,000천원

###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 ~ 15. 7.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668명”을 “6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4명”을 “6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68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54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70명</u>-----</p> <p>-----</p> <p>1. -----<u>656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0 668	293 291	14	128	65	63	51	37	147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37 635	290 288	14	100	37	63	49	37	147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8 596	276 274	11	94	33	61	45	36	136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6.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일반직 7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7급 : 96명 → 97명(행정·방재안전 1명)

#### 나. 일반직 8급 정원 증원 1명(안 별표)

○ 본청 8급 : 95명 → 96명(시설·방재안전 1명)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 68,000천원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6. . ~ 15. 7.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4.7.] [대통령령 제26183호, 2015.4.7., 일부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회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 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혜택 제공하고
-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일상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지원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
  -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 (안 제4조)
  - 도서관, 농업 박물관
  -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 【운동시설(기구) 포함】
  - 주민자치센터, 탁아소, 어린이집

-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한정.

####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우편번호 670-805] 에게 서면이나 메일 (leesbs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055)940-842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1. 도서관, 농업 박물관
2. 공원, 놀이터, 주민운동장 【운동시설(기구) 포함】
3. 주민자치센터, 탁아소, 어린이집
4. 비영업용으로 관리·운영하는 공동 목욕장, 공동 취사장, 공동 세탁장, 공동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오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어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2015.7.1)에 따른 조례개정

3.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 기능 : 심의, 자문기구의 성격

다. 읍면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에게 서면이나 메일 (seosj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 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각 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복지자원을 확보·관리,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의 기능을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 6. (생략)</p> <p>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생략) ② (생략)</p>	<p>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p> <p>제1조(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p> <p>제2조(기능) ①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1.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 ----- ----- 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 각 호 ----- ----- ----- 2. (생략) ② (생략)</p> <p>&lt;신 설&gt; 제4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복지자원을 확보·관리,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의 기능을 한다.</p>

##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 거창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 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한옥마을 지정·공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대상 한옥 및 한옥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한옥의 보존기간, 등록취소, 한옥대장을 규정함(안 제6조 ~제8조)
- 한옥의 신축·개축·수리에 대한 지원신청·결정·기준·변경·완료신고·취소·환수 및 한옥마을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6조)

###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 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의회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전화 055-940-8074, 팩스 055-940-8079, E-mail=cjhgm62@korea.kr)

붙임 :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안 1부.

##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자산을 포함한다)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외관"이란 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한다.

제3조(한옥마을 지정·공고) 군수는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공고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위치한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존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적용된다.

**제5조(등록)** ①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이나 등록예정 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등록예정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 또는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한옥등록예정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한옥의 건축이 준공되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의 보존기간)** 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보수하여 한옥의 외관 등이 한옥의 건축미를 상실하였을 때

**제8조(한옥대장)**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신축 등으로 등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등록한옥이 증축·개축·재축·수선 등으로 형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등록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5. 제7조에 따라 한옥의 등록 취소한 경우

**제9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신축(증·개축 포함) :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③ 같은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한옥은 한 울타리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신축 및 개축의 경우 : 20년
2.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대수선의 경우 : 15년
3.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10년

④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한옥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
  -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음으로써 제9조제2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신축의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상자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한옥신축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주로 한정한다.)
- 2. 신축한옥의 규모 :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지원 한옥규모는 주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경미한 변경)** 군수는 대지면적 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착수신고)** ①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4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 및 신축의 경우에는 한옥등록을 마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0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2.

### 거창군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 현행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지원의 임의적 중단으로 인하여 안정성을 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및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에 따라 거창군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을 추가하고, 위원의 직책명칭을 직제에 맞게 바로잡음.(안 제9조제3항)

###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 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의회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전화 055-940-8074, 팩스 055-940-8079, E-mail=cjhgm62@korea.kr)

붙임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 “창조산업과장, 마을만들기과장, 보건소장, 학교급식센터팀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5. (생략)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u>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u>창조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u>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u>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u>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u>창조산업과장, 마을만들기과장, 보건소장, 학교급식센터팀장을</u>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p>

현행	개정안
1 ~ 9. (생략) ④ ~ ⑥ (생략)	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9. (생략) ④ ~ ⑥ (생략)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 거창군의회 의장

#### 1. 개정이유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사회적 약자와 범죄행위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 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 살인, 성범죄피해를 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 약자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범죄피해자와 배우자, 직계친족으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거창군 지역치안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함



###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 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의회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전화 055-940-8074, 팩스 055-940-8079, E-mail=cjhgm62@korea.kr)

붙임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청소년 등”을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5호 중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18조 제목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를 “(지원금의 지급 제외)”로 하고, 본문 및 제3호 중 “장례비 등”을 “지원금”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적 약자”란 <u>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u>을 말한다.</p> <p>2.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p> <p>3.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사회적 약자”란 <u>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u>을 말한다.</p> <p>2. “범죄행위”란 <u>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u> 말한다.</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치 및 기능) (생략)</p> <p>1. ~ 4. (생략)</p> <p>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u>지원계획 수립</u></p> <p>6. (생략)</p>	<p>제5조(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p> <p>6.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p>	<p>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p> <p>제18조(지원금의 지급 제외) -----  -----지원금-----  -----  지원금-----  -----  1. ~ 2. (생략)  3. -----지원금--  -----  -----</p>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 거창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현재, 가조·고제·위천면 지역에 이식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나, 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일부에 지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현장에서 베어지는 수목을 기증받는 등 군내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산림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무은행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군수의 책무와 사전협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수목 기증 및 수목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옮겨 심을 수목 선정기준, 수목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나무은행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 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거창군의회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전화 055-940-8074, 팩스 055-940-8079, E-mail=cjhgm62@korea.kr)

붙임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목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해당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 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 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0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나무은행에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 ②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은 거창군의 공용·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이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에서 관리하는 수목을 무상으로 옮겨 심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 거창군의회의회장

#### 1. 제정이유

- 거창군과 거창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문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
- 라. 공공기관 등의 국어 사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마.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제11조)
- 사. 국어 활용능력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40-8073, 팩스 : 055-940-8079, e-mail : lgseob@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붙임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과 군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거창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여 국어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 거창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사항과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안제4조)
- 다.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안전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6조)
- 마.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바.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40-8073, 팩스 : 055-940-8079, e-mail : lgseob@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붙임 : 거창군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거창군의회회장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3조)
- 나.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다.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5-940-8073, 팩스 : 055-940-8079, e-mail : lgseob@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670-807)

붙임 :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결사항을 군의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이란 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2. “동의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 예산(해당 연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90일 전까지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협약 중 제5조제3호의 의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

에는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 절차를 진행 중인 협약 및 체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협약에 대하여는 제4조 또는 제5조제3호를 적용한다.